

「제7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」 위원 위촉 계획(안)

<다문화가족 참여회의>

- ◇ (목적)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회의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증진 및 정책 실효성 제고
- ◇ (기능)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, 의견제시 및 자문 등
- ◇ (위원) 다문화가족 20명 이내(의장: 여성가족부 차관)

① 참여위원 위촉 개요

- (회의명) 제7기 다문화가족 참여회의
- (위촉규모) 총 20명 이내
- (임기) 위촉일로부터 2년(24. 9월~10월 위촉 예정)
- (활동내용)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, 의견제시 및 자문,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
 - * 연 2회 내외 서면 또는 대면회의 개최 예정
- (모집방법) 공개 모집 및 지자체 추천을 통한 위원 후보자 모집
 - 지자체 : 17개 시 · 도별 각 2~4명 추천(추천순위 및 추천사유 명시)
 - * 지자체 홈페이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진행
 - 여성가족부 :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및 인재DB 등 활용
- (위촉방법) 지자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여가부 홈페이지 공고 및 인재DB 등을 통해 모집한 후보자 중 선발·위촉

② 추천 기준

- (대상) 다문화가족(결혼이민자·배우자·다문화가족 자녀 등)
 - *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- (세부추천기준) 지원신청서(자기소개서, 정책제안서)를 종합적으로 검토
 -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다양한 분야의 관심 · 경험 등 고려하여 추천

③ 제출방법

- (추천 기한) '24. 9. 3(화) 18:00까지
- (제출서류) : 추천대상자의 지원신청서(자기소개서, 정책제안서, 다문화가족증명서류 포함) 제출
 - * 불임2 양식 참고
- (제출방법)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공문 제출
 - * 전자문서에 지원신청서(자기소개서, 정책제안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 한글 파일 불임 처리

④ 기타 사항

- 지원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- 지원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 - * 선발된 위원 명단만 통보 예정

⑥ 향후 일정 (* 일정 변동 가능)

- 지자체별 위원 후보자 추천 : ~ 2024. 9. 6.(금) (17개 시도→여가부)
- 위원 선발 및 발표(개별 통보 및 공문) : 2024. 9월 말 예정

붙임1

지원 신청서 양식

지원 신청서

신청인				
명	한글		생년월일	
	영문		성별	
주소	(-)			
연락처(H.P)		E-mail		
결혼이민자·귀화자 지와의 관계	, 배우자, 자녀 등			
결혼이민자·귀화자 정보				
출신국가 / 현재 국적	/ ※ 가족중 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출신국가 기입	입국년도	※ 가족중 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입국년도 기입	
주요학력 및 활동 경력				
기간	소속	내용	비고	
※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, 자조모임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한 경험, 실적 등 주요 내용 기술			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에 지원합니다.				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				
신청인		서명 : _____		

<개인정보동의>

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.

- 수집·이용 목적: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모집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소속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, 출신국가, 입국년도, 다문화가족여부 등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5년
- 확인서류: 다문화가족 입증 서류(예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)
※ 개인정보 관련서류는 확인 후 별도 보관하지 않음(폐기 예정)
-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.

■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. 동의함 () 서명 (인)

자기소개서

사진

※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,
지원동기, 그간 활동경험 등을 포함하여 작성(2매 이내) / 휴면명조 13p)

정 책 제 안 서

※ 일정한 양식 없이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
제안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(2매 이내 / 휴면명조 13p)

불임3

〈다문화가족 참여회의〉 운영세칙

1. 목적

-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의 증진 도모

2. 주요기능

-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
-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
-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토론회, 캠페인,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

3. 위원 구성

- 의장은 차관으로 하되, 결혼이민자·배우자·자녀 등 다문화가족 20명 이내로 선정·구성

4. 위촉 및 해촉

- 17개 시·도에서 추천을 받아 국가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촉 하되,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천 할 수 있음
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배제 가능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최대 1번까지 연임 가능
- 위원으로서 기능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,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등 기타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해촉 가능

※ 해촉기준

1. 특별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
2. 범죄, 참여회의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회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
3.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

5. 회의 개최

- 반기별 1회 개최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가능
- 참여회의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안건 또는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반영 노력
-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,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

6. 인센티브

-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, 다문화 가족 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음